

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수정동의안

(의안번호 제546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6. 12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6. 12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1999. 6. 2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수정가결

2. 위탁사유

- 0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0 위탁업체 선정에 위한 절차 및 응모자격 기준 마련
- 0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0 수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책임능력, 인력승계 등을 심사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찰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0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장비승계와 인력을 위탁업체에서 고용 승계하도록 하여 기존인력 생계보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0 본 안의 민간위탁 추진을 현행 관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민간인이 행정에 자율적인 참여는 기대되는 바이나 기존의 군에서 운영하던 인원 10명(기사 4명, 미화원 6명)과 차량 4대의 처분과 인원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우리군내에 수탁할 업체는 있는가
- 답 : 현재는 없지만 위탁한다는 계획에 우리관내 및 타시군에서도 문의를 많이하고 있음.
- 문 : 위탁업을 하려면 특별한 기술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 답 : 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나 경험은 있어야 할 것임.

6. 토 론

- 본 수정동의안의 향후 추진계획 4)항 사업자 선정 말미의 입찰대상자 선정 (총점 70점 이상자)의 규정을 입찰 응찰자의 자격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므로 삭제하여 수정동의

7. 심사결과

- 1999. 6.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